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 (찬성자 24명)

나. 의안번호 : 제 2925 호

다. 발의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이유

-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도로표지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8. 20. ~ 08. 24.)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도(이하 '시도')에 위치하는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해당 도로시설물의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변경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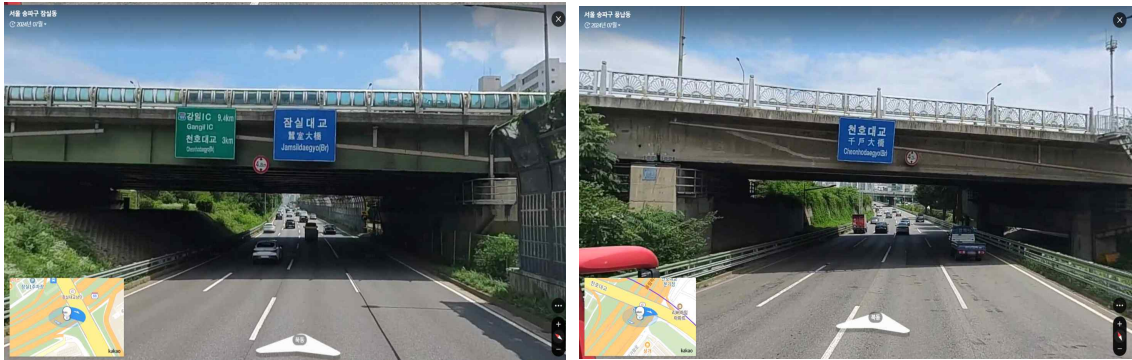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관리시설	○ 문안검토	교통실장	교통관리시설	○ 문안검토	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 <u>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도로표지</u>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u>(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u>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서울시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교통관리시설 중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¹⁾로서

- 시장은 도로표지를 포함한 교통관리시설의 총괄관리자를 현행 제4조2)에 따라 교통실장으로 지정하고, 도로표지의 유지·관리 사무는 도로표지가 설치된 도로 구분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기관에 위임³⁾하고 있음([표] 참고).



[그림] 한강교량에 부착된 도로표지

[표] 현행 교통관리시설 중 '도로표지' 관리기관 현황 ([별표 1] 중 발췌)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 관리 시설	도로표지	○ 문안검토	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2)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2. 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 3)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이에 자동차전용도로⁴⁾의 도로표지 유지관리 업무는 재난안전실로 위임되었으며, 시도에 위치하는 도로시설물⁵⁾에 대한 도로표지는 도로사업소로, 시도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자치구청으로 위임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음.
- 한편, 시도에 위치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 중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는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도로시설물은 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현행 '도로시설물' 관리기관 현황 ([별표 1] 중 발췌)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실장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	○ 도로시설물	재난안전실장

- 이에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경우 시설물 자체 유지관리는 재난안전실이 담당하면서 부속물인 도로표지는 도로사업소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총 9종 605개소(총

4)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km, 지하차도 29개소, 터널 4개소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고속국도 제1호, 우면산로, 강남순환로)

5) 서울특별시도 내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공동구, 언더패스 등 451개소

연장 410.7km)로, 시설물의 규모 및 연식에 따른 안전점검 시기 선정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6)에 따라 1종, 2종, 3종 및 법정의 시설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7)에 근거하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표] 2025년 서울시 도로시설물 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개소, m]

구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공동구	언더패스
합계		605	22	238	83	44	36	118	50	8	6
총연장		410,717	56,521	55,745	82,258	12,090	23,740	47,416	56,584	74,770	1,593
서울특별 시도	1종	85	21	19	12	-	13	3	17	-	-
	2종	148	-	35	22	3	19	40	21	8	-
	3종	199	-	114	23	8	-	43	11	-	-
	법정외	19	-	11	5	-	-	3	-	-	-
자동차 전용 도로	1종	32	1	9	10	5	4	3	-	-	-
	2종	53	-	22	2	15	-	13	1	-	-
	3종	64	-	27	9	13	-	9	-	-	6
	법정외	5	-	1	-	-	-	4	-	-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본 개정안은 시도에 위치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안전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 도로표지는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관리체계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원화된 업무 구조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하겠음.